

의안번호 제1652호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7. 8.(수)
- 나. 제출자 : 안영호 의원 외 2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7. 8.(수)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7. 16.(목)

2. 제안이유

2020. 6. 29.일자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고 국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
 - 신설 국 상임위원회 지정(일자리경제국 → 행정자치위원회)
- 나. 국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

4.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나.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으로
- 신설 국인 일자리경제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임위원회 배정은 위원님들의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0. 7. 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35호, 2020. 6. 29., 전부개정] 중구
(기획예산실)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주민자치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 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공약, 창의혁신, 지방이양사무, 통계에 관한 사항
4. 예산,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5.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6.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7.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기업과·경제진흥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정책,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 시세, 구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득세, 징수, 세외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 주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주민소통과·문화관광과·혁신교육과·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구민협력, 청렴감사,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방문처리제,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공부관리,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생활지원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청소년, 보육, 외국인,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과·건축과·공원녹지과·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통신관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하수, 우수·분뇨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5.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 건축·주택행정,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 심사, 감독, 준공), 문화재·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지시사항